

##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15. 10. 6 규칙 제 806호  
일부개정 2021. 11. 15 규칙 제1053호  
일부개정 2022. 7. 18 규칙 제1080호(회계관리에 관한 규칙)  
일부개정 2023. 7. 31 규칙 제1113호(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규칙  
일괄개정규칙)  
일부개정 2024. 12. 6 규칙 제1155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  
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 등) ①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용인목재문화체험장  
(이하 “체험장”이라 한다)을 운영하면서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  
인 지식과 정보제공에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교육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조(이용시간)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3월부터 10월까지 :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
2.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: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

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4조(휴관) ① 체험장 내 목재문화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〈개정 2024. 12. 6〉

1. 1월 1일, 설 및 추석 연휴
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  
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긴급  
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4조의2(체험신청 등) ① 「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  
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9조제2항에 따른 목공예체험을 하려는 사람은  
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화·인터넷으

로 예약하거나 신청의 내용을 구술하는 것으로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.

②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체험권 발급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 다만, 체험료 납부에 따른 영수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.

1. 목공예프로그램의 종류
2. 목공예프로그램의 수량

[본조신설 2021. 11. 15]

제5조(징수요금의 처리) ① 체험장 관리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당일 징수한 체험료를 다음 날 업무 마감 전까지 지정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1. 15>

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및 「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다. <개정 2022. 7. 18>

제6조(장부의 비치) 체험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, 기록·정리하여야 한다.

1. 삭제 <2021. 11. 15>
2. 삭제 <2021. 11. 15>
3.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(별지 제3호서식)
4. 수입금 일계표(별지 제4호서식)
5. 그 밖에 관리·운영에 필요한 대장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1. 15 규칙 제1053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7. 18 규칙 제1080호,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⑦ 까지 생략

⑧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「용인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및 「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⑨ 생략

부칙 <2023. 7. 31 규칙 제1113호,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. 12. 6 규칙 제1155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21. 11. 15>

체 험 권 (제4조의2 관련)

(앞면)

편 철 부 분	<u>체 험 권 원부</u>	<u>체 험 권</u>	용인목재문화체험장 전경사진	7cm
	No.	No.		
	용인목재문화체험장	용인목재문화체험장		
	체험료	체험료		
	총계	총계		
	용인시장	용인시장		
		당일에만 유효함		
2cm	3cm	3cm	10cm	

(뒷면)

<p>* 용인목재문화체험장 이용안내</p> <p>이용시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하절기(3월~10월) 09:00~18:00</li> <li>· 동절기(11월~다음 해 2월) 09:00~17:00</li> </ul> <p>이용시 유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본 체험권은 발행 당일에만 사용 가능하며 분실 시 재교부 되지 않습니다.</li> <li>· 본 체험권은 영수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</li> <li>·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.</li> <li>· 용인목재문화체험장 전 지역은 금연지역입니다.</li> </ul> <p>* 용인목재문화체험장 TEL _____ / FAX _____                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로 220 /  <a href="http://forest.yongin.go.kr">http://forest.yongin.go.kr</a></p>	편 철 부 분		7cm
13cm	3cm	2cm	

[별지 제3호서식]

용인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(제6조 관련)

용인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				실무관	팀 장	과 장
년 월 일(요일)						
근무자	직 명	성 명		서명(날인)		
징 수 현 황						
구 분	인원/건	현금	카드	계	인 수 자	
체험료		원	원	원	(인)	
특기사항						
주요인사 방문	각종 행사	단체방문	고객 건의사항	그 밖의 사항	방문(관람) 수	
					명	
시설점검사항						
전시실	시청각실	목공예체험실	목공예실	유아체험실	기타	
근무인원(명)						
목공예지도사	강사	숲해설가	숲생태관리인	유아숲지도사	기 타	
그 밖의 특이사항						

[별지 제4호서식]

수입금일계표(제6조 관련)

		결		담당자			
		재					
일자		요일		날씨			
총 수 입	구 분	인원/건수		금 액		비 고	
	체험료						
	계						
환 불	구 분	인원/건수		금 액		비 고	
	체험료						
	계						
잔 액	구 분	수 입		환 불		잔 액	
		인원/건수	금 액	인원/건수	금 액	인원/건수	금 액
	전 날						
	당 일						
	누 계						